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31

제출년월일 : 2018.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우리구의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대행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명시하여 대행업체의 공익성을 제고

나. 「하수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대행기간 내에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 조건 명시 (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대행업체 재계약 조건인 결격사유 여부를 삭제 (안 제9조제3항)

다. 수수료 가산금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항 일부 삭제 및 정비 (안 제19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제외 법령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7. 12. 14. ~ 2018. 1. 3. (제출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3)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동의
4) 부서 자체 추가 검토 결과 : 수정사항 있음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8.3.29)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구조문 대비표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후단 중 “동”을 “같은”으로, “법 제80조제4항”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분뇨수집의무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자에 대하여”를 “신고자에게”로,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며”를 “3년 단위로 하며,”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개월”을 “종료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행업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대행계약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 지정 또는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을 "대행구역은"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범위 내"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위원회는 해산한다"를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청인에 대하여"를 "신청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행업자로 하여금"을 "대행업자에게"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을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서 규정하는"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법 제80조제4항, 법 제8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집·운반 대상	소재지			
	물 량			
	종 류			

「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필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대행사업(업무) :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업무)을 말한다. 4. ~ 6. (생 략)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 따라 ------ ---------- 한다---------- ----------.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	제4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같은 ---------- ------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

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분뇨수집의무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 ---------- ----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 -----.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 ---------- ---------- ---------- 자에게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신고자에게 ---------- ---------- 신고증명서를 ----------.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

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9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 3년 단위로 하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 종료 6개월 ----------.
<신 설>	⑤ 대행업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대행계약기간 내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 지정 또는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⑥ 대행구역은 ---------- ---------- ---------- ----------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① (생 략)	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 ----------.
제9조의5(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제9조의5(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① ---------- ---------- ---------- ---------- ----------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 ---------- 신청인에게 -- ----------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	⑥ ---------- 위원에게는 예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산의 범위----------.----------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행업자에게 ----------.
제12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 따라 ----------.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	제15조(수수료의 감면) ---------- ---------- 제10조에 따른 ----------

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 사실 조사 또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법 제80조제4항, 법 제8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부

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

신고인	상 호 (명 칭)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집·운반 대상	소 재 지			
	물 량			
	종 류			

「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증명서

신고인	상 호 (명 칭)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집·운반 대상	소 재 지			
	물 량			
	종 류			

「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환경과 이정석
연 락 처	02-3153-9265